#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201

발의연월일: 2020. 12. 8.

발 의 자:정춘숙·강민정·권인숙

김상희 · 김영진 · 김윤덕

김정호 • 민병덕 • 박 정

양정숙 · 윤후덕 · 이용빈

장경태 의원(13인)

## 제안이유

현행법상 경력단절여성등은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었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하고, 이들의 경제활동촉진을 위한 시책 마련에 주력해 왔음.

하지만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서는 경력단절여성등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을 주요 정책대상으로 포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고, 경력단절 예방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도 미흡한 실정임.

이에 현행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을 전부개정하고 법 제명을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법」으로 변경하 여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국가 및 사업주등의 책임을 강화하고 정책 대상을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까지 확대하는 한편,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시책의 강화 등을 통하여 성별 고용격차를 해소하고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국가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법률 제명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서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법」으로 변경함.
- 나.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을 통하여 성별고용격차를 해소하고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국가경제의 지속적 발 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다. "경력단절 예방"의 정의 규정을 신설함(안 제2조).
-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포함하고, 사업주는 여성의 경력단절예방을 위한 근로환경 개선 및 여성의 고 용안정을 위하여 노력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함(안 제3조 및 제4조).
- 마.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중요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기 위하여 여성경제활동촉진정 책협의회를 두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 바.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의 임금, 직종, 고용형태 현황 등이 포함된 여성경제활동백서를 매년 발간하도록 함(안 제10

조).

사.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생애주기별 여성 경력설계 및 개발 상담 등을 실시하고, 경력단절여성등의 직업적응을 위하여 일경험 지원 사업을 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5조 및 제16조).

법률 제 호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법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법은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을 통하여 성별고용격차를 해소하고,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국가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 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 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 2. "경제활동 촉진"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기업 등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

하다.

- 3. "경력단절 예방"이란 경제활동여성이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의 사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함에 있어서 여성의 생애주기,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주의 책무) ① 사업주는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근로환경 개선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사업주는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한다.

# 제2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

제5조(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동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 2. 경제활동여성 및 경력단절여성등의 현황과 전망
- 3.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주요 시책
- 4. 그 밖에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때에는「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④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하 여야 한다.
  -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 ③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동으로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이행상황을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 제7조(계획 수립 및 시행의 협조) ① 여성가족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법인과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8조(여성경제활동촉진정책협의회)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과 협의 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에 여성경제활동촉진정책협의회(이하 "정책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제1항에 따른 정책협의회의 구성, 기능,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시·도지사는 시행계획 등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정책협의회를 둘 수 있다.
- 제9조(실태조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효율적인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과 경제활동 촉진 정책을 세우기 위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는 등 정책 수립의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 폭부렁으로 정한다.

제10조(여성경제활동백서)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의임금, 직종, 고용형태 현황 등이 포함된 여성경제활동백서를 매년발간하여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 제3장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경제활동 촉진 시책

- 제11조(일자리창출 지원 등) ① 정부는 경력단절여성등의 연령, 경력, 학력 등에 적합한 취업과 창업 등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경제활동여성의 일자리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성별임금 격차 완화 등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한다.
- 제12조(구인·구직 정보수집)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여성과 관련된 구인(求人)·구직(求職) 정보를 수집하고 구인·구직의 개척에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정보를 경력단절여성등과 사업주에게 제공한다.
- 제13조(직업교육훈련)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여성인력개발기관 등 여성가족부렁으로 정 하는 기관에 경력단절여성등의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지원한 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한다.

- ③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직업교육훈련에 필요한 지원을 한다.
- 제14조(경력단절 예방 사업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 은 경제활동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을 실시한다.
  - 1. 경제활동여성의 경력유지 및 개발을 위한 지원 사업
  - 2. 경제활동여성의 경력단절예방을 위한 사회·문화적 인식개선 사 업
  - 3. 성차별 없는 직장 환경 조성 사업
  - 4. 그 밖에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 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사 업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한다.
- 제15조(생애주기별 여성 경력설계 및 개발 상담 등)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여성인력개발기관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생애주기별 여성 경력설계 및 개발 상담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제16조(일경험 지원)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경력단절여성등의 직업적응을 위하여 기업 등에 인턴취업지원사업 등 일경험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일경험 지원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한다.
-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일경험 지원과 취업연계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한다.

#### 제4장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등

- 제17조(중앙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①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 관은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중앙여성경 제활동지원센터(이하 "중앙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운영할 수 있 다.
  - ② 중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상담, 교육 등 사업프로그램의 개발·보급
  - 2.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사회문화적 인식 개선 및 홍보 사업
  - 3. 취업·창업지원 등의 상담, 교육 등 사업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 4. 경력단절여성등의 직장 조기 적응 프로그램 개발·보급
  - 5.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관련 기관, 기업 과의 전국단위 네트워크 구축·운영
  - 6. 지원센터 평가 및 컨설팅
  - 7. 지원센터 인력의 보수교육, 교육훈련 및 근로환경 조사
  - 8. 그 밖에 여성가족부렁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중앙지원센터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조(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①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단위의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 1. 혼인·임신·출산과 휴직 후 복귀 등에 관한 상담, 정보제공 및 경력관리
  - 2. 생애주기별 경력개발교육, 멘토링 및 네트워크 형성 등 경력단절 예방 프로그램 지원
  - 3. 취업·창업 정보 제공 및 상담
  - 4. 직업교육훈련, 취업알선 및 취업 후 직장적응 지원
  - 5. 보육 지원 등 복지서비스 제공 및 연계
  - 6.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관련 기관, 기업 과의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운영
  - 7. 그 밖에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② 지원센터에는 여성경제활동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운영과 제2항에

따른 인력의 자격과 배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9조(지정취소) ①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중앙지원센터 또는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지정받은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 3. 제17조제3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 4. 그 밖에 중앙지원센터 또는 지원센터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경우
  - ②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 ③ 중앙지원센터 또는 지원센터의 지정취소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장 보칙

제20조(보고ㆍ검사) ①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감독에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21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 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의한 사무를 수행하고 자 하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22조(관계 기관의 협조)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거나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수 있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경력단절 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4조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기본계획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 기본계획으로 본다.
- 제3조(실태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경력단절 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7조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 활동 실태조사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실태조사로 본다.
-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